

춘천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합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승계참가인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상민

변론 종결 2020. 11. 18.

판결 선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들과 원고들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승계참가 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원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들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4075호(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원고들을 상대로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확정되었다.

1.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은 2016. 3. 31.까지 원고(이 사건 '피고')로부터 춘천지방법원 2014카합6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을 취하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2016. 3. 31.까지 피고들로부터 연대하여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항 기재 가압류 신청사건을 취하한다.

4.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2002년경 피고들의 부동산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나. 위 화해조서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9. 27. 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수표 1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모른 채 관련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원고 A 소유였던 춘천시 E 전 3,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200만 원을 불법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 중 33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1) 수표 1억 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관련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반한다.

2) 피고가 원고들 몰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금을 불법 인출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재판상화해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나. 수표 1억 원에 관한 부분

원고들은, 관련 소송에서 수표 1억 원과 관련하여 증인 F이 위증을 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표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측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표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관련 소송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금으로 수표 1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재판상 화해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수표 1억 원 관련 주장은 위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대출금 불법인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02.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2002. 5. 8.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3. 5. 30.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소유자인 원고 A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그 대출금을 불법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의 청구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두봉, 판사 류하나, 판사 박채은